

제26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 례 안 상 정

(13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2-117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2-118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7
2022-119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17
2022-120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미래전략과)	37
2022-121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41
2022-122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인구교육과)	51
2022-123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무과)	63
2022-124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정책과)	69
2022-125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복지정책과)	73
2022-126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	79
2022-127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림과)	85
2022-128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환경과)	91
2022-129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01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 7. 5.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의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방법·절차, 위원회 심의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유를 정함(안 제2조)
- 다.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유를 정함(안 제3조)
- 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방법, 서면 결과통지를 정함(안 제4조)
- 마. 조례 제정·개정 시 위원회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 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개발·보급을 위한 실태조사, 조사·연구 의뢰, 홈페이지 게재 등을 정함(안 제6조)
- 사. 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시 고려사항, 자료·의견 요청, 조사·연구 의뢰 등을 정함(안 제7조)
- 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료·의견 요청, 조사·연구 의뢰 등을 정함(안 제8조)
- 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대행을 정함(안 제9조)
- 차. 위탁근거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5항·제8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4항
-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10. 24.~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거창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3. 「건강가정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

4.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성 평가(이하 “지속가능성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평가 결과
 3. 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미래 성장 50년을 위한 관광, 신산업 발굴 등 미래성장산업 추진 동력확보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국, 1담당관 신설

1)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 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

2)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나. 1과 폐지: 미래전략과

다. 국 신설에 따른 과 조정

국	과
행정국(4)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복지국(4)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안전건설국(5)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라.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총 정원 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7.~11. 22.

나) 예고결과: 의견 1건(반영)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 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경제교통 과장	교통담당을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로 사무분장 건의	도로정책·시설 업무와 연계 및 경제교통과 업 무 과중 해소를 위해 안전건설국 건설과로 이관 하는 것이 적절	반영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을 “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3. 일반민원행정, 자동차등록,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경제, 기업성장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 정책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송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3.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제9조4호 중 “방역”을 “방역, 동물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학교급식”을 “외식산업, 학교급식”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안전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②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래전략과장, 건설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④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⑤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⑥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⑦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⑧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⑪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u>기획예산담당관</u> 을 둔다.	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u>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u> 을 둔다.
제4조(국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u> 을 둔다.	제4조(국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u> 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군 현안·역점 사항 추진,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육성, 투자유치 등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7.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3. 일반민원행정, 자동차등록,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u>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u> <u>제6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u> <u>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u> <u>1. 시장·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에너지정책, 교통행정·운수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u> <u>2.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재해복구, 안전점검, 민방위, 통신·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u> <u>3. 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향노화,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u> <u>4.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u> <u>5.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등 건설에 관한 사항</u> <u>6.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제6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u> <u>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u> <u>1. 시장·경제, 기업승강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 정책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u> <u>2.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u> <u>3.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u> <u>4.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u> <u>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u> <u>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u> <u>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u> <u>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 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 방역,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 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16. 외식산업, 학교급식,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93	360 358	17	149	76 75	73 74	41	42 43	184 185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56	354 352	17	119	46 45	73 74	40	42 43	184 185
	4급	5 4	4 3		1		1			
	4~5 급	0 1							0 1	
	5급	39 38	15	3	6	4	2	3	1 0	11
	6급 이하	712 713	335 334	14	112	42 41	70 71	37	41 42	173 174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7	3		3	3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주민투표법」 개정(2022. 4. 26.)으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전자청구서명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재기재,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위임근거 삭제에 따른 정비
(안 제2조~제4조, 제8조·제9조, 제13조)

1) 법령 재기재 및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삭제

(가) 군의 책무: 「주민투표법」 제2조~제4조 재기재

(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19세: 「주민투표법」 제5조 개정으로 18세로 하향 조정

(다) 거소: 「주민투표법」 제5조 개정으로 재외국민 거소 삭제

(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주민투표법」 제12조의2 재기재

2) 위임근거 삭제에 따라 삭제

(가) 주민투표의 대상: 조례에 위임하였던 것을 「주민투표법」 제7조에 직접 규정

나. 전자청구인서명부 신설(안 제8조제1항, 제10조)

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운영 등 정비(안 제13조~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제5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4.~11. 23.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 조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중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제15조를 제13조·제14조로 하고 제13조·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위원장이 따로”를 “의장이”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

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례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 ”
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
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u>조례로 정하도록 한</u>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u>위임된</u>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삭 제></u>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u><삭 제></u>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분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군수는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 주민투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군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② (생략)

③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⑥ (생략)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청구인 서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명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15년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2)

- 1) 현행: 2022년 12월 31일
- 2) 변경: 2027년 12월 31일

나. 용어를 순화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기금 5,942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10. 31.~11.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계상”을 “반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미래전략과장”을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지원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중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u>제2조의2(존속기한)</u>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u>제3조(기금의 조성)</u>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u>매 회계연도마다</u> 세출예산에 <u>계상</u> 하여 출연할 수 있다. <u>제5조(기금의 운용·관리)</u>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u>미래전략과장</u> 2. 기금출납원: <u>기업지원담당주사</u> ③ (생략) <u>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u>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u>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주사</u>가 된다.	<u>제2조의2(존속기한)</u>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u>제3조(기금의 조성)</u>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u>회계연도마다</u> 세출예산에 <u>반영</u> 하여 출연할 수 있다. <u>제5조(기금의 운용·관리)</u>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u>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u> 2. 기금출납원: <u>기금업무 담당주사</u> ③ (현행과 같음) <u>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u>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u>기금업무 담당주사</u>가 된다.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관내 중소기업 금융기관 이자지원

나. 관련 조문: 제8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총 비용(a - b)		5,675	5,126	4,586	4,046	3,506
수입	예치금	5,942	5,675	5,126	4,586	4,046
	이자수입	49	51	60	60	60
	소계(a)	5,991	5,726	5,186	4,646	4,106
지출	사업	316	600	600	600	600
	소계(b)	316	600	600	600	600

3. 관련 의견: 사업자금 융자 이자를 보전함으로써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군내 중소기업 육성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중소기업 금융기관 이자지원: 600백만원

작성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농업 분야 위원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과 청년이 지닌 역량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여 그들이 거창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시 당연직 위원 추가함(안 제10조제3항)

1)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위원회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순서 및 내용 등 정비(안 제10조의2·제10조의3, 제11조·제11조의2·제12조)

다. 청년수당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신설함(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203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3.~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와 제10조의3,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인구교육·문화관광·복지정책 및 경제 업무부서의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종전 제11조)제1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 제12조)제1항 중 “제척”을 “제척(除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종전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군수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군정 참여
2. 소셜미디어 활용한 군정홍보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u> <u>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 <u>1. 거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 <u>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u> <u>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u> <u>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u> <u>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⑦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u>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 <u>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u>	<u>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 <u>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u>1. 당연직 위원: 기획·인구교육·문화관광·복지정책 및 경제 업무부서의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u> <u>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u> <u>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 <u>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u> <u>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u> <u>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u>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납용한 경우</u> <u>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u> <u>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u> <u>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신 설></u>	<u>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0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u> <u>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u> <u>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
<u><신 설></u>	<u>제11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u> <u>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u>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④ (생략)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u>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u>제척</u>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u>제척(除斥)</u>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결혼축하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디딤돌통장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자금의 대출 이자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결혼축하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디딤돌통장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자금의 대출 이자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u><신 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20조의2(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u> 군수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군정 참여 2. 소셜미디어 활용한 군정홍보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1) 청년수당

2)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나. 관련조문: 제16조의2, 제20조의2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합계		203	203	203	203	203	1,015
세출	청년수당	200	200	200	200	200	1,000
	지역공동체 강화 청년활동 지원	3	3	3	3	3	1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청년수당

가. 매년 100가구

나. 1명당 200만원 지원

2.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가. 매년 15명

나. 1명당 20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임기를 변경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여 거창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함께 규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4조·제6조·제10조)

1) 열람 및 이용시간, 도서관 외 자료대출, 부속시설 이용기준

다. 부속시설 사용료, 수수료 폐지(안 제12조·별표)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정비(안 제16조~제19조)

1) 임기변경: 1년 ⇒ 2년

2) 신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마. 그 밖에 용어순화 등(안 제7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34조·제4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4.~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제2항제1호·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료대출)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7조 조 제목 및 본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부속시설 이용) ①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부속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부속시설 이용시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조 제목,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을 “이용”으로 각각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면 조 제목 및 본문(기존 제1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5조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업무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나. 그 밖에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이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 및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u> <u>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u> <u>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u> <u>4. “부속시설”이란 도서관 내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을 말한다.</u> <u>5. “사용료”란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u> <u>6.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u> <u>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u>	<u>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다.</u> <u>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u>

한다.

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자료실 : 09:00 ~ 18:00(다만, 토·일요일은 09:00 ~ 17:00)
2. 자유열람실 : 09:00 ~ 22:00(다만, 휴관일은 09:00 ~ 18:00)

제6조(자료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 이면서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대출 열람인이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부속시설을 사

한다.

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자료대출)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대출 열람인이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부속시설 이용) ① 다목적실과

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사용시간)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일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2.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시설 사용 및 도서관 자료복사·자료출력의 경우 별표와 같이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그 부속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청각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부속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부속시설 이용시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행사

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전염병환자,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제13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4조(이용자 책임)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감염병환자,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

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구교육과장
2.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실비변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업무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나. 그 밖에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급공사의 의무적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과 관련된 요건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함(안 제2조)

1)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나. 적용범위 확대함(안 제3조)

다. 법령 범위에서 관급공사의 의무적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요건 정비함(안 제6조)

1)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2) (현행)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

⇒ (변경)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관급공사일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8.~11.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 제9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대금지급의 전자적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하도급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6. (생략) 7.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를 말한다. 8.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0·11. (생략) 12.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군이 도급을 받은 자에게 공사나 용역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6. (현행과 같음) <삭 제> 7.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9·10. (현행 제10호·제11호와 같음) <삭 제>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u>한다)가 체불임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제6조(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군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군은 5천만원 이상인 모든 관급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u> <u>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③ 군수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 군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u> <u>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6조(대금지급의 전자적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하도급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u> <u>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u> <u>2.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u> <u><삭 제></u>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거창군 재향군인회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근거 신설(제4조)

1) 법령 근거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나.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함(안 제2조·제3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8,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8.~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조에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에 따라”로 ““거창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거창군 재향군인회”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재향군인회원”을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한다.

제4조(재정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조 제목 “(지원대상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제4조”로 “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념하는 사업”을 “기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회원”을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향군”을 “재향군인”으로 “교육사업”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사업”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순례사업”을 “순례”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u> 2. “재향군인회”란 법 <u>제6조의 규정에 따라</u> 조직된 “<u>거창군 재향군인회</u>”(이하 “<u>재향군인회</u>”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u> 2. “재향군인회”란 법 <u>제6조에 따라</u> 조직된 <u>거창군 재향군인회</u>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어려운 <u>재향군인회</u>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어려운 <u>재향군인회 회원</u>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 사업 3.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 2.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 업무 교육 3.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현 행	개 정 안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교부절차,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함양 교육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삭 제></u>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군민이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군수의 책무, 실행계획의 수립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6조)
- 라. 통합돌봄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정함(안 제7조~제8조)
- 마. 통합돌봄회의, 통합돌봄 심의·자문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바. 통합돌봄센터 설치·기능, 위탁근거를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119,800천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10. 28.~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거창군민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노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춰 주거, 보건·의료, 영양·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거창군 통합돌봄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통합돌봄 대상 발굴 및 지원방안
 3.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운용
 5. 통합돌봄에 대한 교육·홍보·연구·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 기관, 전

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합돌봄 사업 등) 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3. 건강한 재가생활을 위한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
4.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
5. 통합돌봄 관련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통합돌봄 대상) 통합돌봄 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1. 주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3. 주민참여 교육·연구 또는 연수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통합돌봄회의) 군수와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장은 통합돌봄 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통합돌봄회의를 개최한다.

1. 통합돌봄 대상의 욕구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조정을 통한 고난도 사례 서비스지원
 2. 통합돌봄자원(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용역 등을 말한다) 개발과 통합돌봄 사업 지원
 3. 통합돌봄 정책과제 개발
- ② 통합돌봄회의는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통합돌봄 대상 및 통합돌봄 제공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다. 이 경우 통합돌봄회의 참석 대상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돌봄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통합돌봄 심의·자문) 군수는 통합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3. 통합돌봄 사업의 역할 분담 및 조정
4.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통합돌봄센터) ① 군수는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돌봄 대상과 상담
2. 통합돌봄 대상의 지속적인 지역 거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통합돌봄 지원

3.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사항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6조, 제9조 및 제11조

나. 발생요인

- 1) 통합돌봄에 관한 사업(주거환경, 보건·의료, 일상생활 유지, 관련 조사 및 연구 등)
- 2) 통합돌봄회의 관련 참석자 수당
- 3) 통합돌봄센터 설치·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계	240,000	385,000	470,000	440,000	440,000	1,977,022
군비	119,000	264,000	349,000	319,000	319,000	1,370,000
도비보조 (2022년 기준 매칭비율 5:5)	121,000	121,000	121,000	121,000	121,000	607,022

3. 관련 의견: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보장증진에 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240,000	385,000	470,000	440,000	440,000
공간 개선비		30,000	60,000	30,000	-	-
돌봄인력 인건비		130,000	200,000	270,000	270,000	270,000
운영비(사무관리비)		30,000	50,000	70,000	70,000	70,0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주거분야	20,000	30,000	40,000	40,000	40,000
	보건의료분야	20,000	30,000	40,000	40,000	40,000
	돌봄분야	10,000	15,000	20,000	20,000	20,000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신 동 범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최적의 화장시설 부지 선정 등 군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조례 입안 원칙에 맞게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다. 화장시설 설치 및 위치, 부대시설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라. 부지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5조)
- 마. 화장시설 설치위원회 기능·운영 등을 정함(안 제6조~제14조)
- 바.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지원을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38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10. 31.~11.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화장시설의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위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화장시설에는 화장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제5조(부지선정) 군수는 최적의 화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부지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①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장시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등

2.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지원 범위 및 내용
 4. 화장시설 설치부지의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화장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복나눔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 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군민, 사회단체 대표자 등
 - 라. 그 밖에 군수가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경비지원) 군수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2. 그 밖에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화장시설 설치
 - 나. 관련조문: 제3조 설치 및 위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합계
국비		1,900	2,006	3,906
도비		400	437	837
군비	100	7,500	7,657	15,257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3년도 화장시설 타당성 용역비: 100백만원
2. 2024년도 이후
 - 가. 화장시설 설치
 - 1) 총비용: 20,000백만원
 - 2) 국비 확보 계획
 - 나. 주민지원사업비는 기금조성 계획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이 호 현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힐링랜드 시설사용료의 기준과 감경기준을 추가하고,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힐링랜드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힐링랜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근거 신설(안 제3조의3)

나. 주차장 사용료 및 감경기준 신설(안 제5조제3항, 별표 2, 별표 3)

1) 사용료 신설: 경차, 1,000시시 차량

가) 30분 기준 250원(10분 초과당 100원 추가)

나) 1일 2,500원

2) 50퍼센트 감경: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

다.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의 사용료 추가징수 기준 신설(안 별표 2)

1) 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2) 추가 가능 인원 1실당 2명

3) 별표 3에 따른 감면을 적용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3.~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 ① 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 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7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 ① 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7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u>③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u>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u>
---	--

[별표 2]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시설명	구분	사용 기준	사용료		추가 징수 기준	
			성수기	비수기		
1. 주차장	가. 경차 나. 1,000cc 이하 미만	30분	250원		10분 초과당 100원	
		1일	2,500원			
	가. 승용차, 승차인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나. 1톤 이하 화물차	30분	500원		10분 초과당 200원	
		1일	5,000원			
	가. 승차인원 16인승 이상 승합차 나. 1톤 초과 화물차	30분	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	
		1일	10,000원			
	2. 산림 휴양관	36제곱미터 (2명~4명)	1일	100,000원	70,000원	-최대수용 인 원 초과 1명당 1만원
		52제곱미터 (6명~8명)		140,000원	90,000원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
80제곱미터(10명)		180,000원		150,000원		
3. 숲속의 집	38제곱미터(2명~4명)	1일	100,000원	70,000원	-별표 3에 따른 감정률 적용 제외	
	52제곱미터(6명~8명)		140,000원	90,000원		
4. 셔틀버스	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					

비고: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별표 3] 시설사용료 감경 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주차장<신 설>

감경대상	감경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	50퍼센트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감경대상	감경률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급~3급인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	
4급~7급인 국가보훈 대상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퍼센트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
4. 감경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을 정함(안 제2조)
- 다.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정함(안 제3조)
-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함(안 제4조~제12조)
 - 1)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등
 - 2) 거창군 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행(안 부칙 제2조)
- 마.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정함(안 제13조)
- 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을 정함(안 제14조)
- 사. 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을 정함(안 제15조)
- 아.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정함(안 제16조)
- 자.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지(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2)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억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7.~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7.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교통, 에너지, 산림,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 또는 군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2. 군민 대상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3. 그 밖에 군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군민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군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위원회를(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환경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3. 지역환경 영향평가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5.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
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대책으로 본다.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요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나. 관련조문: 안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 5년마다 수립
(나) 용역비: 100,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국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0
군비		30,000

국비:군비=70:30

작성자 환경과 환경과장 신종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확충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 수거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영악화가 심화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화율에 가깝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별표 6)

1) 수거식 화장실

가) 10리터 기준 174원 ⇒ 185원

나) 11원 인상, 인상률 6.3퍼센트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가) 기본요금

(1) 750리터까지: 17,100원 ⇒ 20,080원

(2) 2,980원 인상, 인상률 17.4퍼센트

나) 초과요금

(1) 100리터마다: 1,150원 ⇒ 1,350원

(2) 200원 인상, 인상률 17.4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제4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0.~11. 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185원 174원	15원	200원 189원

2.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20,080원 17,100원	1,125원	21,205원 18,225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350원 1,150원	150원	1,500원 1,300원

비고

1. “수집·운반” 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포함
2. “처리” 란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처리를 말함